



서울구로경찰서

2023. 1. 31.

사건번호 2022-004538

제 목 불송치 결정서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

I. 피의자

주식회사 지오크리에이티브 (김진영)

II. 죄명

상표법위반

III. 주문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IV.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피의자 주식회사 지오크리에이티브는 피의자 회사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상표법 위반

- 피의자 회사는 두상교정모 '지오헬멧'을 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고소인 회사는 두상교정모 '하니헬멧'을 판매하는 회사로 '하니헬멧'이라는 상표의 상표권자인 사실, 피의자 회사가 '지오헬멧' 광고를 위해 2022. 3.경 광고 대행업체에 기존에 진행하던 키워드 광고를 위탁한 사실, 광고 대행업체 위탁 전 피

의사 회사 직원인 박 기 피의자 회사 키워드 광고를 담당한 사실, 광고 대행 위탁 전 피의자 회사 키워드 광고는 '대체키워드' 설정 없이 진행되었던 사실, 광고 대행업체 직원 양 가 피의자 회사 키워드 광고를 담당한 사실, 양선미는 '대체키워드'를 설정하여, 기존 설정된 키워드인 '하니헬멧'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피의자 회사 광고 소재에 '하니헬멧' 상표가 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 회사의 대표가 키워드 광고를 통해 '하니헬멧'이라는 상표가 '지오헬멧'이라는 상표와 관련되어있는 것처럼 광고 소재에 표시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피의자 회사도 양별규정에 따라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 회사의 대표는 상표권 침해의 실행위자가 아니기에 기 불송치되었으나, 피의자 회사는 광고 대행업체 직원 양 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치되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종현 검사는 광고 대행업체 직원을 피의자 회사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대체키워드'를 등록하였거나, 등록할 것을 광고 대행업체에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회사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는지 문제 된다는 등, 이를 명확히 하여 혐의유무 재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하였다.
- 피의자 회사 직원 박 의 진술, 광고 대행업체 직원 양 의 진술, 광고대행업체 작성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하니헬멧' 키워드를 등록한 사람은 박 , 대체키워드를 등록한 사람은 양 로 범이 상당하고, 박 기 광고대행업체에 '대체키워드' 설정을 요청하거나, '하니헬멧' 상표가 피의자 회사 키워드 광고 소재에 현출되도록 요청한 사실 없다고 범이 상당하다.
- 대체키워드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니헬멧'이라는 상표가 피의자 회사 광고에 현출되지 않으므로, 참고인 박 이 상표법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 참고인 양 는 '하니헬멧'이 이미 키워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대체키워드'라는 추가적인 광고 기능을 이용하였을 뿐이기에, 고소인 회사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참고인 양선미가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보더라도, 피의자 회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기에 피의자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 적용할 수 없다.
- 피의자 주식회사 지오크리에이티브의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피의자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은 상표법을 위반한 사실 없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사법경찰관 경감 고민영